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발 의 자 : 도정태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권고에 따라 이를 본 규칙에 반영하고, 배지패용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옥내·외 의회 기의 표준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 “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”을 “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”으로 함

나. 옥내·외용 의회 기의 표준규격을 가로 135㎝, 세로 90㎝로 통일
(안 제4조제1호)

다. 배지의 패용위치를 사의 좌측 옷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규칙 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규칙 제　　호

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”을 “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〔별표 1〕”을 “별표 1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중 “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㎝, 세로 140㎝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㎝, 세로 90㎝”를 “비율로 하되, 실내(외)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㎝, 세로 90㎝”로 하고, 제4호중 “〔별표 2〕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〔별표 3〕과”를 “별표 3과”로 한다.

제10조중 “좌측”을 “상의 좌측”으로 한다.

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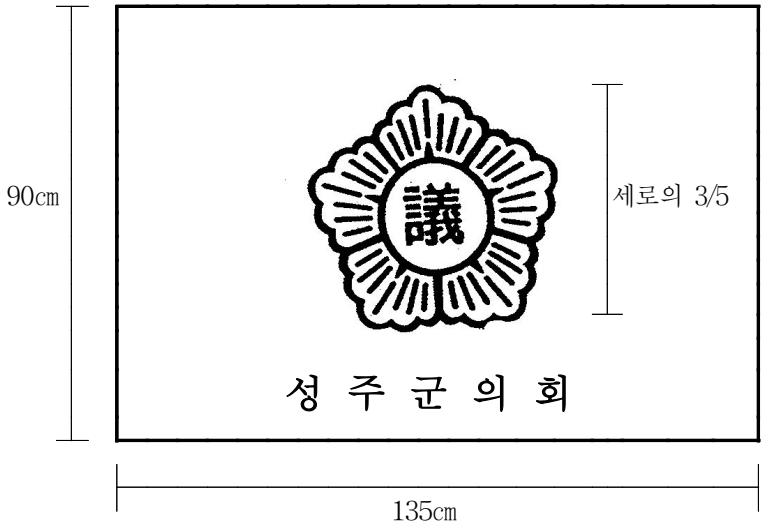
부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 **표지도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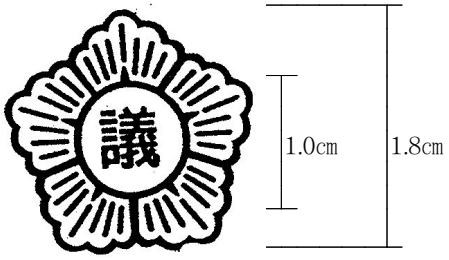


【별표 2】 **의회기 모형도**



【별표 3】 **배지 모형도**

모 형



규 격

모 형 내 용		규 격
무 궁 화 형	5支	1.8㎝
화 대 형	5支	1.4㎝
화 반 원 형	1	1.0㎝
원 자 막	議	0.8㎝

※ 재료 : 순금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	제명 성주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
제2조(사용표지의 도형)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 도형은 [별표 1]과 같다.	제2조(사용표지의 도형) ----------별표 1 -------.
제4조 (생 략) 1.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,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, 세로 90cm로 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. 2. ~ 3. (생 략) 4.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[별표 2]와 같다.	제4조 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 비율로 하되, 옥내(외)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cm, 세로 90cm --------. 2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----- 별표 2 -------.
제8조(배지 제식) ①의원의 배지 제식은 [별표 3]과 같다. ②(생 략)	제8조(배지 제식) ①----------별표 3과 ------. ②(현행과 같음)
제10조(배지패용 요령)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.	제10조(배지패용 요령) --- 상의 좌측 ----------.